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41
----------	-----

2025. 6. 11.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30. 강남구청장(위생과)

나. 상정의결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

-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 신설(안 제18조)
- 나. 위원회 관련 규정을 포함한 일부 조문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5년 추경예산안 편성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25. ~ 5. 15.) 결과,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함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주현 )

###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 조례 제정

- 2020년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고용창출 및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

#### ○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 2025년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려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함. 강남구 공고 제2025-1074호 입법예고 결과, 지원대상의 범위를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함.

### 나. 검토 내용

○ 일부 조문 정비

-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한 대부분의 정비 내용(제1조·제4조·제6조·제8조·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제16조·제20조)은 타당하다고 보임.

○ 위원회 구성 규정 개정

- 일자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정책을 기획·심의·조정하는데 참여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안 제9조제3항제2호의 경우 용어를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sup>1)</sup>

< 위원회 구성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생 략) ③ (생 략)</p> <p>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사업 소관 국·과장</p> <p>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p> <p>3. 4. (생 략)</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생 략)</p> <p>1.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 과장</p> <p>2.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p> <p>3. 4.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생 략)</p> <p>1. (개정안과 같음)</p> <p>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p> <p>3. 4. (현행과 같음)</p>

- 현행 제9조를 개정안과 같이 변경할 경우 위촉직 위원으로 1차적으로 임명할 후보의 검토 대상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 안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일부 일자리사업 소관 국·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일자리위원회 임명직 위원 후보 대상자의 범위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토될 대상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 변경되며, 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등 참조.

**< 일자리위원회 위원 후보 대상 범위 >**

구분	현 행	개 정 안
일자리위원회 위원 후보 대상자 (이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경제국장</li> <li>• 복지생활국장</li> <li>• <b>일자리정책과장</b></li> <li>• <b>어르신복지과장</b></li> <li>• <b>장애인복지과장</b></li> <li>• <b>가족정책과장</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경제국장</li> <li>• 일자리정책과장</li> <li>• &lt;삭 제&gt;</li> <li>• &lt;삭 제&gt;</li> <li>• &lt;삭 제&gt;</li> <li>• &lt;삭 제&gt;</li> </ul>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남구의회의원 (강남구의회 추천)</li> <li>• 지역 일자리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남구의회의원 (강남구의회 추천)</li> <li>• 지역 일자리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b></li> </ul>

**○ 지원 규정 신설**

- 2020년 일자리정책 제정 당시 놓친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18조 조문과 그 내용과 연계된 사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임. 현행 제18조제1항에서 설명하는 실질적인 지원 대상은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 이지만 그 내용을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로 연결시키고 있음.
- 일자리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에 부합하는 조문은 제6조 및 제7조이므로 이를 정정하여야 그 연계성이 타당하다고 보임.

**<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 >**

구분	현 행	수 정 의 건
지원 사업	제5조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 일자리창출 사업
	제6조 일자리창출 사업	제7조 취업지원 사업
지원 대상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	

**<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

현 행	수 정 의 건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18조에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일자리창출 사업과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된 현행 제18조제1항의 지원 대상 범위에 안 제18조제3항의 지원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 >**

구분	현 행	개 정 안
업무 추진	지원 대상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een; padding: 2px;">취업지원 사업</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2px;">                     (신설) (일자리창출 추진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기존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li> <li>• 구에 소재한 소상공인</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purple; padding: 2px;">일자리창출 사업</div>		

- 앞에서 살펴본 혼선 재발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 위원회 구성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기여하거나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lt;신 설&gt;</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구청장은 <b>제6조</b>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u>2.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u></p> <p>② (개정안과 같음)</p> <p>&lt;삭 제&gt;</p>
---	--	---

- 제6조(일자리창출 사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고용촉진에 대한 지원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성격과 매우 유사하지만,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그 신청 및 지급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하지 않음.

**[붙임 1]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도 (2025. 1. 기준)**

-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적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자치구는 도봉구와 동작구가 있는데, 2곳 모두 중앙-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 판단 절차에 따라 ①보건복지부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지원금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지방재원)’임을 확인 후 ② ‘정부로부터 유사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문구를 공고에 명시하고, ③지원대상 선정 절차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공문을 통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했고, ④사전고지된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였음. (※주의: 반환 발생 사례 있음)

**[붙임 2]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확대) 공고 (2024. 9. 기준)**

**[붙임 3] 2024년 동작구 중소기업 고용지원 모집 공고 (2024. 1. 기준)**

- 특히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안 제18조제3항을 별도로 신설하더라도 법령체계에 따라 상급기관에 사업적합성 여부를 심사검토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항을 분리하여 신설할 실익이 없다고 보임.

## 다. 종합 의견

### ○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

- 규정 신설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대상 확대는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제외 사업주(임금체불 등 발생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제외), △장려금 지급 제한 및 기 지급 된 장려금 환수(고용조정을 명목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제외)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4촌 이내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고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sup>2)</sup>

### ○ 위원회 규정 정비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규정을 비롯한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 일자리정책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매년 운영하여 국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함.
-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 가능하고, 강남구 소재 비중이 높은 음식점업, 물류운송업, 건설업 등 지원대상 산업 특성에 맞춘 구인난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면 국가고용정책에 부합하는 시책 수립 및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안내 참조.

## ※ 관계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5. 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7호]

**제4조(적용범위 등)**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시행지침’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35호]

## ※ 참고 자료

### [붙임 1]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2025. 1. 기준)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다만,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려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수준 및 한도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 형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단, 사업주가 신청기간(고시 제19조제2항) 위반시에는 지원제외 대상임)

- (지원한도)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지급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 [붙임 2]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확대) 공고

(2024. 9. 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1466호

###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공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도봉구청장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4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4. 1. ~ 12. (예산 소진시까지)

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4. 1.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당초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변경

라. 지원인원: 25명 (업체당 최대 2명)

마. 지원내용: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바. 신청기간: 2024. 4. 1. ~ 12. 31. (선착순 마감)

#### 2.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기간: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 간 지원

[예시]

채용일	3. 15.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신청 기간	6. 1. ~ 12. 31.	○3월 ~ 5월 (3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지원 대상 기간	신청월부터 최대 6개월 간	○고용 및 도봉구 주민등록 계속 유지 ○신청 당시 채용일 포함 4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경우에 한해 초과월에 대해 일괄 소급 지급 ○지원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및 지원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방문 확인

<b>비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말일 기준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b>다음 달 25일경 지급</b>(월별 지급)</li> <li>○ 1개월 미만 근무 시 해당 월 미지원 (예) 근로자가 6. 29. 퇴사 시 지원금은 5월분까지 지원</li> </ul>
-----------	--

#### 나. 지원조건

- ①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신규 채용
- ② 근로자는 지원 대상 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 유지  
  - ※ 매월 말일 기준 지원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지원금 지급(월별 지급)
- ③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파견 불가)
- ④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기준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⑤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완납

#### 다. 지원제외

- ①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업종 제외(주업종 기준) (※ 붙임 제외업종 참고)
- ②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고용한 경우
- ④ 1인 자영업자: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제외
- ⑤ 사업주와 근로자 간 교차 사업장으로 신청한 경우
- ⑥ 동일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한 경우
- ⑦ 희망장려금 지원 근로자에 한하여 채용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정부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인턴십 등 유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이중·중복지원 불가) ※ **업체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유사 지원금 수급은 가능함**
- ⑧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도봉형 희망장려금을 지원 받은 업체 중 지원금 합산 600만원을 모두 지원 받은 업체  
  - ※ 근로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1인당 지원 한도(최대 300만원)가 남은 경우, 잔여 한도 내에서 신청 및 지원 가능
- ⑨ 기타 도봉구에서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체

**라. 유의사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청구할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4. 4. 1 ~ 12. 31.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나.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 시 반드시 접수 확인

- ① 방 문: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② 팩 스: 02-2091-6265
- ③ 이메일: kenzo0202@dobong.go.kr

다.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신청서류	①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각 1부. ③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붙임) 서식
증빙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⑥ 사업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사업주 동장 사본 1부. ⑧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월 기준) ⑩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 관리번호 다를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추가 ⑪ 월별 급여명세서 및 임금 내역서(신청월 기준 최근 3개월 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확인 ⑫ 사업장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신청시 제출

### 4.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가. 선정방법: 접수순에 따라 지원요건 적합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나. 결과통지: 선정 업체에 유선 통보

### 5. 문의사항: 도봉구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팀 ☎ 02-2091-2862

붙임: 1. 신청서식 각 1부.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1부. 끝.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사업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도봉구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도봉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 도봉구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 도봉구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 등)를 환수 및 범죄혐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 도봉구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도봉구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도봉구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2024. . .

도봉구청장 귀하

사업주

(서명)

공동사업주

(서명)



# [붙임 3] 2024년 동작구 중소기업 고용지원 모집 공고

(2024. 1. 기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 - 158호

동작구에서는 동작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난 해소를 위해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 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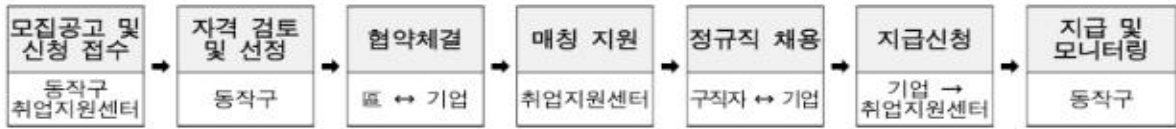
- 가. 사업명 : 동작구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 나. 사업기간 : 2024. 1. ~ 12. ※ 예산 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다. 사업목적 : 일자리 창출 및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
- 라. 지원대상 : 동작구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
- 마. 사업내용 : 구민을 신규 채용(정규직)한 기업에 채용장려금 지급
  - 1) 지원규모 : 30명(기업당 최대 2명)
  - 2) 지원내용 : 채용장려금 최대 510만원 지급(채용기간별 차등 지급)
  - 3)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4) 지원방법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고용 기간에 따라 3회 분할지급

구 분	합 계	1차 지급 (채용 3개월 후)	2차 지급 (채용 6개월 후)	3차 지급 (채용 12개월 후)
채용장려금	510만원	90만원 (월30만원×3월)	120만원 (월40만원×3월)	300만원 (월50만원×6월)

### 2. 사업(신청)대상

- 가. 지원대상 : 동작구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중소기업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나. 지급요건 : 지원대상 중 동작구민을 신규 채용(정규직)한 경우
  -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

### 3. 사업추진 절차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연중 ※ 공고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제출서류 ※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제출

- 1) [서식작성] 참여신청서,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2)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제출시 일부서류 면제 가능

다. 접수방법 : 동작취업지원센터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 1) 방 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2층 동작취업지원센터
- 2)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2층 동작취업지원센터  
또는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경제정책과
- 3) e-mail : fortrob@dongjak.go.kr

라. 결과발표 : 심사 후 개별 통보

###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은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선정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 공고문 미기재 사항은 동작구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계획, 매뉴얼 및 동작구의 해석에 따름.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 질 의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이번 개정으로 신설하는 제18조제3항과 관련하여, 제3항 신설 대신 제1항 조문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
- 답 변 :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은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으로 일종의 보상금이고 보조사업으로 보기가 어려워 수정의견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집행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이 타당함

## 7. 토론 요지

- 조문의 전체적인 체계와 간결성 제고를 위하여 약칭 규정의 위치를 조정하고, 입법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정확하게 정비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됨

##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541호

발의일자 : 2025. 6. 11.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 약칭 규정의 위치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함
- 근거 조문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하도록 수정함

## 2. 수정내용

- 용어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문의 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칭 규정의 위치를 조정하여 조문을 수정함(안 제9조제3항제1호, 제2호)
-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근거 조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하도록 수정함(안 제18조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18조제1항 중 “제5조 및 제6조 각 호”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u>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u>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 및</u> ----- ----- ----- <u>기여하는 것을</u> ----- ----- ----- <u>목적으로 한다.</u></p>	<p>(개정안과 같음)</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u>조례에서 정하는 바에</u> 따른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 <u>조례를</u> ----- ----- ----- .</p>	<p>(개정안과 같음)</p>
<p>제6조(일자리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u></p>	<p>제6조(일자리창출 사업)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취약계층</u> -----</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u></p> <p>6. <u>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u></p> <p>7. (생략)</p> <p>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① <u>구청장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p> <p>6. 「<u>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2조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u>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u></p> <p>7. (현행과 같음)</p> <p>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u>&lt;삭 제&gt;</u></p> <p><u>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수립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4. 그 밖에 <u>위원장이</u>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u>구청장</u> ----- -----	(개정안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구청장이</u>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개정안과 같음)
1. <u>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사업 소관 국·과장</u>	1. <u>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u>	1. <u>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u>
2. <u>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원</u>	2. <u>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u>	2. <u>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u>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0조(위원의 임기) ① <u>위촉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공무원인 위원</u>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위원의 임기) ① <u>위촉직 위원</u>----- ----- -----<u>&lt;단서 삭제&gt;</u></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u>보좌하며</u>,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보좌하고</u>, ----- ----- -----</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u>소집하며</u>, 그 의장이 된다.</p> <p>② (생략)</p> <p>③ 정기회는 연 1회 <u>소집하며</u>, 임시회</p>	<p>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 ----- <u>소집하고</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소집하고</u>, -----</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는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1.·2. (생략)</p> <p>④ (생략)</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u>두며</u>, 간사는 일자리정책 과장이 된다.</p> <p>⑥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u>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u> 위원은 <u>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p>	<p>----- <u>각 호</u>-----</p> <p>-----.</p> <p>1.·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 <u>두고</u>, -----</p> <p>-----.</p> <p>⑥ <u>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u>-----</p> <p>-----.</p> <p><u>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u> -----</p> <p>----- <u>직접적인</u>-----</p> <p>----- <u>경우 해당 안건의</u> -----.</p> <p>② -----</p> <p>----- <u>있고</u>,</p> <p><u>위원회의 의결로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u></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u>그 사건</u>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제11조제1항</u>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u>아니한</u> 경우</p> <p>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자 협의체에 <u>참석한</u>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u>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u>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p> <p>③ ----- ----- <u>해당 안건</u> ----- -----.</p> <p>제11조(위원의 해촉) ----- -- <u>각 호</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위원이 제12조제1항</u> ----- ----- <u>않은</u> -----</p> <p>제16조(수당 등) ----- --- <u>참석한 위촉직</u> ----- -----.</p> <p><u>&lt;단서 삭제&gt;</u></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u>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따른</u>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u>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u>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lt;신설&gt;</p> <p>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 ----- ----- <u>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재한 중소기업(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lt;삭제&gt;</p>	<p>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u>일자리창출을 위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u>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u>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u>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를 “조례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수립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제4호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사업 소관 국·과장”을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남구의원”을 “구의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1조제1항”을 “위원이 제12조제1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해당 안전에 관하여 직접적인”을 “직접적인”으로, “경우”를 “경우 해당 안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있다”를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그 여부를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제3항 중 “그 사건”을 “해당 안전”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보좌하며”를 “보좌하고”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중전의 제1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집하며”를 각각 “소집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두며”

를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를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참석한”을 “참석한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5조 및 제6조 각 호”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6조 및 제7조”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u>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u>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6조(일자리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u></p> <p>6. <u>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u></p>	<p>제1조(목적) ----- ----- ----- <u>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u> ----- ----- ----- <u>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 ---- <u>조례를</u> ----- ----.</p> <p>제6조(일자리창출 사업)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취약계층</u> ----- -----</p> <p>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가목, 다목부터 <u>마목까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u></p>

7. (생략)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어르신, 청년, 여성,

사업

7. (현행과 같음)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수립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현행과 같음)

4. ----- 구청장-----  
-----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 기획경제국장, 일자

장애인 등 일자리사업 소관  
국·과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원
3. 4. (생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생략)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  
다.

리정책과장

2. -----  
----- 구의원
3.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보좌하  
고, -----  
-----  
-----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  
----- 소집하고,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소집하고,  
----- 각 호-----  
----- .

1. 2. (생략)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두고, -----  
-----.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직접적인 -----  
-----  
----- 경우 해당 안건의 -----  
-----.

② -----  
-----  
-----  
-----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 은 그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  
----- 해당 안건 -----  
-----.

제11조(위원의 해촉) -----  
----- 각 호 -----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자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이 제12조제1항-----  
----- 않은 -----  
--

제16조(수당 등) -----  
----- 참석한 위촉직 -----  
-----  
----- <단서 삭제>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6조 및 제7조-----  
-----  
-----  
---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소상공인에게 예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1
----------	-----

제출년월일: 2025. 5. 30.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일자리정책과

## 1. 제안이유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 신설(안 제18조)
- 나. 위원회 관련 규정을 포함한 일부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2025년 추경예산안 편성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4. 25. ~ 5. 15.) 결과,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함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를 “조례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수립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제4호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10조제1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1조제1항”을 “위원이 제12조제1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을 “직접적인”으로, “경우”를 “경우 해당 안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있다”를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그 여부를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제3항 중 “그 사건”을 “해당 안건”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보좌하며”를 “보좌하고”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중전의 제1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집하며”를 각각 “소집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두며”를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를 “구청장

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참석한”을 “참석한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u>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u>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6조(일자리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u></p> <p>6. <u>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u></p>	<p>제1조(목적) ----- ----- ----- <u>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 -</u> ----- ----- <u>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 <u>조례를</u> ----- -----.</p> <p>제6조(일자리창출 사업)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취약계층</u> ----- -----</p> <p>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p>

7. (생략)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어르신, 청년, 여성,

사업

7. (현행과 같음)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수립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현행과 같음)
4. ----- 구청장-----  
-----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 장

장애인 등 일자리사업 소관  
국·과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원

3. 4. (생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생략)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좌  
고-----  
-----  
-----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  
----- 소집하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소집하고-----  
----- 각 호-----  
-----

다.

1. 2. (생략)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두고-----  
-----.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직접적인-----  
-----  
----- 경우 해당 안건의 -----  
-----.

② -----  
-----  
-----  
-----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  
----- 해당 안건-----  
-----.

제11조(위원의 해촉) -----  
----- 각 호-----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자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이 제12조제1항-----  
----- 않은 -----  
--

제16조(수당 등) -----  
----- 참석한 위촉직 -----  
-----  
----- <단서 삭제>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  
-----  
-----  
-----  
---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소상공인에게 예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 비 용 추 계 서

## I . 비 용 추 계 요 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301,557	301,557	301,557	301,557	301,557	1,507,785
	소계(b)	301,557	301,557	301,557	301,557	301,557	1,507,785
□ 총 비용(a-b)		-301,557	-301,557	-301,557	-301,557	-301,557	-1,507,785

4. 재원조달 방안 : 연도별 사업예산(구비) 편성
5.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김선혜(02-3423-5582)

## II . 비 용 추 계 의 상 세 내 역

1. 고용장려금 : 1,500,000원 × 200명 = 300,000,000원
2. 홍보물(현수막) 제작 : 77,819원 × 20매 = 1,556,380원